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회사” 라 한다)의 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회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3)

제 2 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전 사업장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은 국내외 각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와 협력회사 소속 직원 및 근로자들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안전보건관리” 라 함은 불안전한 상태, 행동을 사전에 시정, 제거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는 모든 계획과 행동
- ② “사고” 라 함은 사망, 직업병, 질병, 상해, 손상 및 기타손실 등을 일으키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 일
- ③ “안전사고” 라 함은 근로자의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 선행되어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켜 직·간접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고
- ④ “산업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
- ⑤ “중대재해” 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
 1.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제적으로 책임지는 자를 말하며, 현장은 인사발령으로 지정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된다.
- ⑦ 관리감독자
당해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업무와 소속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
- ⑧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자격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는 자
- ⑨ 재해다발 현장

당해 연도 사고성 재해로 산재승인 2건 이상인 현장

⑩ 산재승인 현장

현장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관련기관 (법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승인된 사고가 발생한 현장

⑪ 사망 만인율

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text{사고사망 만인율(\%)} = \frac{\text{사고사망자 수}}{\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10,000$$

$$\text{상시근로자 수} = \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 임금} \times 12}$$

⑫ 산업재해 은폐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업무상 인적재해를 안전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⑬ 재해 즉보

재해발생시 즉시 보고를 뜻하며 유선 및 전산 보고를 통합

⑭ 불안전한 상태

물리적·기계적인 상태와 조건이 불안전하여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

⑮ 불안전한 행동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와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⑯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이라 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다룬 법률.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다.

⑰ 중대재해처벌법 (이하 “중처법” 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

⑱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이하 “협의체” 라 한다)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은 해당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산안법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 4 조 (책임과 권한)

① CSO(안전보건실장)는 본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CSO(안전보건실장)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제도에서 필요한 사항을 모든 업무에 우선적으로 조치

- ②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규정·재해예방계획·안전시설·안전시공방법 등에 대해 주지시키고 알려줄 의무가 있다.
- ③ 근로자는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임,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업무절차)

① 안전보건방침

1. 전사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교육과 게시를 통해 협력업체 인원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이해되고 지속적으로 개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해관계자가 요구시 안전보건방침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토록 한다.

2. 현장 안전보건방침

현장 특성을 반영한 선언적 문구로 작성하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현장 구성원이 작성, 협력업체 인원을 포함한 현장 구성원 모두에게 이해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법령의 요지 및 게시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규정 또는 당해 현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항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근로자 대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 필요사항에 대해 건의, 요청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재해예방계획수립

1.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인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체계

1. 회사는 도급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2)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 3)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7)번 항목에 따른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1> 화재·폭발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설비 등에 끼임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

4> 근로자가 추락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옴

6>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짐

7>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

2. 회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

회사(현장)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보건전담조직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며, 이는 본사와 현장으로 구분한다.

1.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1) CSO(안전보건실장)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전사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한다.

2) 안전보건팀장은 점검, 예산, 인력운영, 장비, 보건 등 전사 안전보건관리를 운영한다.

3) 안전기획팀장은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대응을 운영한다.

4)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실 내 안전팀 및 안전기획팀 직원으로 한다.

5) 관리감독자는 각 팀의 팀장 및 팀원으로 한다.

2. 현장 안전보건 관리조직

국내현장 및 기타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이 단위조직을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현장소장(실제 현장 총괄 책임자)이 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유자격자로 법적 선임기준에 의거 선임된 자를 말한다.

3) 관리감독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⑦ 업무분장(본사)

1. 안전보건실장(CSO)

1) 안전보건실장(CSO)은 당사 전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존과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할 책임 및 권한이 있다.

2) 안전보건책임자인 안전보건실장(CSO)은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되고 안전보건팀장 및 안전기획팀장의 지도·조언을 받아야 하며, 본사 및 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항에 대해 총괄 지휘할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2. 안전보건팀장 및 안전기획팀장

안전보건실 내 인력운영, 교육, 예산 편성 및 집행, 재해관리, 안전·보건·장비 점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총괄 및 분석을 담당하며 본사 및 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항에 대해 관리하고 CSO(안전보건실장)에게 지도·조언을 해야한다.

3. 안전보건담당자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실 내 직원으로서 안전보건실장, 안전보건팀장, 안전기획팀장을 보좌하며 당사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4. 관리감독자

각 팀장 및 팀원은 관리감독자로서 본사 안전보건실의 지도·조언에 협조하고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⑧ 업무분장(현장)

이 규정에서 명시한 업무분장 외 현장 구성원의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은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서 정한다.

1. 태영건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각 현장소장은 발령과 동시에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되고 본사 안전보건팀장 및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을 받아야 하며, 직영·외주공사 전반에 대해 지휘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예산 사용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외주공사 협력업체의 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며,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공사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예산 사용 승인 및 집행할 수 있다.

3. 관리감독자

담당 현장, 공중의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근로자의 작업안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예산 사용을 건의하고 필요시 집행할 수 있다.(협력업체 관리감독자 포함)

4.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에 대하여 지도, 조언할 책임 및 권한이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포함)

5.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할 책임 및 권한이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⑨ 안전보건담당자의 직무(본사)

1. 안전보건관리업무 계획, 수립 시행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련규정·지침서 제정 및 개정
3.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 검토·조정
4. 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점검리뷰회의 운영
5.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분석
6. 동종재해예방을 위한 재발방지조치 및 대책 수립
7. 각종 사고의 원인조사, 분석 예방대책 강구
8. 안전·보건점검 실시 및 결과분석 리뷰
9. 전사·협력사 안전보건교육계획(TY안전아카데미) 수립 및 실시
10. 당사 및 타사 재해사례 전파
11. 안전보건관리 취약현장 집중지원 및 지도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기준 수립 및 모니터링
13. 안전일터 조성의날 행사 추진 및 지원
14. 안전보건관리 상별 및 징계 발의
15. 개인보호구 및 교육장 등 표준화 실시, 관리
16.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류회 운영 지원

17. 산업안전보건장조기간 행사 또는 안전보건에 관련된 행사계획 및 추진
18. 급박한 위험 내재 및 안전조치 미비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권
19.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전사 안전보건활동 추진
20.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교육, 관리
21. 본사 안전보건예산 계획수립 및 집행
22. 근로자 의견청취 및 작업중지권(TY안전콜) 관리 및 피드백
23. 안전보건관리 사내 전산시스템(QSE) 효율화
24. 건설장비 관련 자율안전검사 및 합동안전점검
25. 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지도·교육
26. 협력회사 입찰 시 안전역량평가 실시 및 자율적 수준향상 유도

⑩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 및 직무(현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현장별로 선임(협력회사 현장소장)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 1>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2> 총 공사금액(관급자재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현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현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이행

2. 안전관리자

- 1) 본사 안전보건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현장별로 선임하고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50억 이상 800억 미만	1명 이상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2명 이상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3명 이상
2200억 이상 3000억 미만	4명 이상
3000억 이상 3900억 미만	5명 이상
3900억 이상 4900억 미만	6명 이상
4900억 이상 6000억 미만	7명 이상
6000억 이상 7200억 미만	8명 이상
7200억 이상 8500억 미만	9명 이상
8500억 이상 1조 미만	10명 이상
1조 이상	11명 이상
2조 이상~	3천억마다 1명 추가

※ 공사기간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의 안전관리자 선임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름

3) 안전관리자의 직무

- 1> 산안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 산안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8>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수행
- 9> 순회점검시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제거 또는 감소되지 않는 경우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심각한 부적합 발생시 시정조치요구서를 해당부서나 협력업체에 발부
- 10> 동일한 내용의 시정예방조치요구서를 2회 이상 발부하였거나 조치가 지연되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작업 협력업체에 공사중지명령과 공사중지 사실을 즉시 현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아래 절차를 따른다.
 - 1차 : 시정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 2차 : 주의장 발행
 - 3차 : 불량협력사 실태보고서 안전보건실 송부
 - 4차 : 협력사 관리규정에 의한 불량협력사 제재
- 11>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계획서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등)을 관리해야 한다.
-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3>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4> 당사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 각종 지침에 따른 업무

3. 보건관리자

- 1) 본사 안전보건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현장별로 선임하고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공사금액	보건관리자
800억 이상(토목공사업 1000억 이상)	1명 이상

3) 보건관리자의 직무

- 1> 산안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과의 직무(단, 의료법에 의한 의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6>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7>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단, 의료법에 의한 의사, 간호사에 한정한다)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15> 당사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 각종 지침에 따른 업무
- 4) 보건관리자는 업무상 필요시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4. 관리감독자

-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근로자 직접지휘 및 통제가 가능한 자)로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 2) 관리감독자의 직무
 -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현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산안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7>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⑪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한다.
 - 1) 근로자위원
 - 1> 근로자대표
 -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감독관
 -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2) 사용자위원
 - 1> 해당 사업의 대표자(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2>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3>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3) 현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 사용자위원으로서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3. 직무 및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6)호의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10)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11)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회의 결과 등의 처리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 2)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4> 그 밖의 토의사항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는 게시, 방송, 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전파, 주지시켜야 한다.

⑫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1. 협의체 구성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원청) 및 그의 관계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 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 협의내용
 - 1) 작업의 시작시간
 -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 4) 작업장에서 산안법 36조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3. 협의체 운영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4. 회의기록 및 주지의무

협의체 회의결과는 게시, 방송, 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전파, 주지시켜야 한다.

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
-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명예감독관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⑭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 작업지휘자의 정의

작업지휘자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안전작업을 지휘, 통제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공사별 담당자·공구장·반장 등이 이에 해당되며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할 책임 및 권한이 있다(협력업체 관리감독자 포함).

2. 작업지휘자 배치 대상 작업 및 역할

-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지휘, 통제
-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의 지휘, 통제
- 3)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의 지휘, 통제
- 4)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 지휘, 통제
- 5) 중량물의 취급작업 지휘, 통제
- 6)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지휘, 통제
- 7)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등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⑮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교육의 기준, 내용, 시간, 실시, 기록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현장에서 각 사업주가 실시해야할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2) 안전보건 교육 강사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회사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
- 3)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 교육확인서, 위탁계약서를 수령하여 보존한다.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 1) 본사 및 현장은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 2) 안전보건교육 결과 기록
안전보건교육 일지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육종류 및 일시, 수강인원, 업체명, 교육내용 등 기입
 - 2> 교육수강 확인서 작성(개인별 서명)
 - 3> 사진대지 기록(교육 강사 및 수강인원이 최대한 확인 가능하도록)
 - 4>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교육시간 및 내용

⑩ 작업장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성과측정
 - 1>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추진계획 및 월간 안전보건활동계획을 작성한다.
 - 2> 항목별 추진 담당자와 일정,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3> 상·하반기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 성과측정 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본사 안전팀으로 보고한다.
 - 4> 미달성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차기 년도 안전보건목표에 반영하도록 한다.
- 2) 연간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성과측정
 - 1> 현장소장 안전보건방침,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보건법규, 현장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5개 내외의 연간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한다.
 - 2> 목표별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책임감을 부여한다.
 - 3> 성과측정은 반기 1회 실시(상/하반기)하도록 한다.
 - 4> 미달성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 개선을 한다.

2.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1) 안전관리자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방호조치를 갖추고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조언하여야 한다.
- 2) 관리감독자는 방호조치 및 위험예방을 실시해야 하며, 항상 안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 부득이 방호조치를 해제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제하여야 한다.
- 4) 기계·기구 및 설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 5)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의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제86조 ~ 제224조를 준수한다.
- 6)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를 따른다.

3.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 이라한다)를 제조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이라한다)을 제조하는 때에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 3)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지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 5)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6)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7) 안전검사의 면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른다.
 - 8) 안전검사의 주기
 -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실시
(단,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타워크레인은 3개월 마다 실시한다)
 - 2>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 그 후 2년마다 실시
4.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1) 작업장 바닥
작업장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2) 작업발판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사용
 - 2> 폭은 40cm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3cm이하로 설치
 - 3>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 4>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간판을 설치하고 작업의 성질상 설치가 곤란할 때는 추락방호망을 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
 - 6>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3) 추락방지
 - 1>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 2>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 3>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떨어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높이 2m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및 작업전 이상 유무 점검

5>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 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고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
-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 유지
-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4)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1>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시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유지

5) 붕괴방지

1> 토사등에 의한 위험방지

-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
- 갱내에서의 낙반 또는 측벽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한다.
-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 조치를 한다.

6) 장갑의 사용금지

목재가공용 둥근톱 및 드릴기, 기계 등의 회전하는 날 부분에 작업 중인 근로자의 손이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장갑을 사용토록 하여서는 안 된다.

7) 작업통로

1>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2> 작업통로는 통로표시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작업통로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 4>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 5> 작업통로에는 높이 2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8) 정격하중표시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을 알 수 있도록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9) 감전 위험방지
 - 1>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리하거나 절연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전기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접지(접지봉 지하 70cm)를 하여야 한다.
 - 3> 분전함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0) 울의 설치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전락으로 인한 화상·질식 등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호퍼·핏트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울을 설치한다.
- 11) 투하설비
높이가 3m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할 때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 위험물질 보관 및 출입 제한
유해·위험물은 ①등급, ②종류의 표시, ③담당자 지정 후 작업장과 격리시켜 보관하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시킨다.
- 5.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2) 회사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 3) 회사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 4) 기타 위험물질의 보관에 관하여는 위험물저장소 관리지침에 따른다
- 6.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1) 재해발생 시
 - 1> 자동 작업중지 효력 발생
 - 2> 추가 재해발생 가능성 확인 → 현장보존 → 사고조사 및 분석
 - 3> 위험요인이 제거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공사재개
 - 2)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 1> 해당 작업 선 작업중지(지시) → 근로자 대피
 - 2> 보고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팀장
 - 3> 위험요인이 제거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공사재개
- 7. 안전표지, 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 안전보건표지 및 수칙은 유해·위험한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안전보건표지는 작업환경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당해 환경이나 작업내용에 적합하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3) 합동안전보건점검
 -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매월 “안전일터 조성의날” 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협력업체 관리책임자/근로자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한다.
 - 2> 관리감독자, 일일안전담당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장의 안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순회점검을 위하여 전일 DSFM을 통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현장에 적합한 점검표를 작성·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활동을 하며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3>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의견청취를 시행하여야 한다
- 4) 고위험작업 사전계획 및 허가제도
 - 1> 사전작업허가서(Permit To Work, PTW)
 - 2> 고위험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아래 작업에 대해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사 관련팀의 검토·점검 및 근로자 교육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가설비계 작업허가
가설 비계(강관, 시스템 등) 비계 작업 전 협력사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해당 작업에 대한 구조검토, 조립도 등을 제출하고 검토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STBM)
 - 1> 매일 작업 시작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종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한다.
 - 2>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협력사별, 공종별 책임관리자를 선정하여 작업장에서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6) 비상조치계획
 - 1> 회사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2>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7) 피난 및 대응훈련
 - 1> 회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 실시하고 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 2>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 3>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4> 비상연락체계는 회사 내부뿐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⑰ **작업장 보건관리**

1.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건강진단

당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그 기록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단, 해당연도 채용시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특수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해진 기본주기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배치 전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시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임시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용노동지청장의 명령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건강진단 결과 보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특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검진기관으로부터 그 실시 결과를 통보 받았거나 근로자로부터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그 실시 결과를 보고한다.

8>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9> 건강진단 결과조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의 변경

- 작업의 전환
- 근로시간 단축
- 기타 적절한 조치

2) 작업환경측정

1> 측정대상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2> 측정주기

대상 작업장이 된 후 30일 이내 최초실시, 이후 6개월에 1회 실시한다
단, 측정결과에 따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에 1회 실시한다

3>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그 결과치가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국소 배기장치의 설치 등 근원적인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화학적 인자(182종),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기타유해물질(12종)
- 물리적 인자(2종)
8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558조 고열 작업
- 분진인자(7종)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석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5> 결과보고

지정 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 측정기관이 관할노동관서에 결과 제출, 시료채취를 마친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한다.

2.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유해물질의 취급,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또는 진동의 발생, 이상기압의 발생, 병원체에 의한 오염,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에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체물의 사용,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1) 보호구 지급은 현장 근로자에 한해 작업투입 전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 2) 지급한 보호구는 지급대장에 기록한 후 현장에 비치한다.
- 3)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여야 한다.

4.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1) 사업주는 산안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2)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3) 다음 각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근로를 금지시켜야 한다.

- 1> 질병에 걸려 전염의 우려가 있는 자
- 2> 조현병, 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자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4>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애 또는 그 후유증
 -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 천식, 비만증, 그 밖에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애 등과 관련된 질병

5.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1> 회사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 | |
|-------------------|----------------|
|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 유해성·위험성 |
|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 응급조치요령 |
|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
| - 취급 및 저장방법 |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 - 물리화학적 특성 | - 안정성 및 반응성 |
| - 독성에 관한 정보 |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 폐기 시 주의사항 |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 - 법적규제 현황 | - 그 밖의 참고사항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3> 회사는 대상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회사는 대상화학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 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7> 회사는 대상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 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 유해성·위험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 근골격계 질환예방

- 1> 회사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3>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 1>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반창고
 - 외상에 의한 소독약
 - 지혈대, 부목 및 들것
 - 화상약 등
- 2>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 3> 구급용구는 안전·보건관리자가 관리한다.

3)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 1>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 외에 버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2>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해야 한다.
- 3> 현장에서 배출 또는 폐기하는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고 병원체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있는 벽, 바닥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 4> 현저히 분진을 비산하는 옥내·외 작업장에 대하여는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근로자 상담, 부상의 치료등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건강관리실을 설치·운영한다.

⑱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1.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1) 재해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후 인근 요양기관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 2) 2차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안전팀 및 유관팀에 사고경위를 유선 또는 사내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 사고발생 즉시 현장소장은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팀 및 유관팀에 보고한다.
 - 2) 안전팀 및 유관팀은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 1> 중대재해 및 일반재해(경미한 경우 생략 가능) 발생시
 - 2> 불확실한 재해 및 허위보고 라고 판단 될 시
 - 3> 재해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 3) 재해분석 및 대책수립
 - 1> 현장은 사고조사 및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팀 및 유관팀에 보고한다.
 - 2> 안전팀은 현장에서 작성한 사고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반기마다 발생한 재해내용을 집계, 현황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 4) 안전팀은 당해 연도 재해를 총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5)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해당본부 및 전 현장에 통보한다.
 - 6) 재해발생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 1> 안전보건실은 반기별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재해분석 결과는 안전보건위원회 시 보고하며 회의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지한다.
3.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에 관한사항
 - 1) 현장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 상황도, 재발방지대책 자료 작성
 - 2) 본사 : 재해발생 현황, 재해발생 분석 및 징계 계획(안) 작성
 - 3) 문서관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서 정한 문서분류체계표에 의해 구분 및 파일링 실시

⑲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 사업장의 공사수행 시 위험성평가에 적용하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1) 최초 위험성평가
 - 1> 최초 위험성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착공 후 1개월 이내 작성한다
 - 2> 당사 최초 위험성평가 기초자료, 당사 및 타사재해사례, 착공전

종합시공발표회(KOM), 공종별 시공계획 발표회(PCM) 등을 참고하여 공종별로 최초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한다.

2) 정기 위험성평가

- 1> 정기 위험성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이후 1년마다 실시한다.
- 2> 현장의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 수시 위험성평가

- 1> 수시 위험성평가는 다음 회차에 대한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월 1회 이상 해당 회차 시작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 한다.
- 2> 아래와 같은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추가 실시할 수 있다.
 - 법규 제·개정으로 위험성 평가기준 변경 시
 - 수시 위험성평가 기간 중 누락된 위험요인 발견 시

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위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다.

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 을 따른다.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편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도급공사는 발주처로부터 반영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이상을 편성한다.
 - 2> 자체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 비율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 이상을 계상한다.
 - 3>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반 시공비용에 우선적으로 반영 사용해야하며, 사용실적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4)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공사금액의 변경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감액 사항이 발생 시에는 실행예산서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

2. 집행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통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 안전업무를 실제 수행중인 자가 관리한다.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서식 제1호에 의거 작성한다.
- 3)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본사 안전팀의 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㉕ 문서(서류) 관리

문서관리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사 시스템 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1. 문서분류체계 및 기록목록표

- 1) 안전보건관리 및 활동으로 생성되는 문서는 문서분류체계에 의해 구분 및 파일링 하여 관리한다.

2. 서류이관 및 보존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사고(재해)관련 및 건강진단결과표 기록 일체는 현장

준공 후 본사 해당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2) 기타 각종 서류의 보존연한에 관하여는 관련 안전보건시스템 문서에서 정한다.

3)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㉓ 상벌

1. 포상 및 징계 상신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현장(팀)또는 직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당사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상신할 수 있다.

2. 포상 상신 대상자

1) 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대상자 중에서 상신한다.

1> 안전보건관련 대외 포상 수상 시 (장관급 이상)

2> 전 공정 무재해 준공사업장

3>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또는 사내, 외 안전보건활동 경진대회 우수사업장

3. 징계요구대상자

1) 징계요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 발생 시

2> 재해은폐로 경영상의 손실 발생시(PQ)

3> 사고성 산재사고 발생 원인이 관리감독자의 업무태만 및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4> 대외기관 점검 시 벌금 처분 현장 및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으로 PQ감점 적용 시

5>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한 사고

(붕괴, 낙하, 장비 사고, 화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

6> 정당한 사유 없이 본사의 안전지침이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하여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현장의 관련 책임자

4. 상,벌 세부기준

안전보건관련 상벌에 관한 세부 기준은 “현장 안전사고 징계기준” 에 따르면 징계수위는 “상벌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㉔ 변경절차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㉕ 준수

1.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한다.